

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2 조(수시공시) 및 신탁약관 제 51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.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BEST 모아모아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1호

2. 시행일 : 2007. 10. 22.

3.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

◇ 변경 사유

- (1) 종류형투자신탁으로 변경하고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는 클래스(A) 및 온라인전용 클래스(C-e) 신설 (기존수익자 : C 클래스)
- (2)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단축
- (3) 수탁회사 보수 인하
- (4) 2006 년 7 월 12 일에 개정된 표준신탁약관에 맞추어 신탁약관내용 수정

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제 1 조(목적등) ①~②(생략) <u><신설></u>	제 1 조(목적등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 138 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기준가격이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, 투자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8 조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)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 ()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<u>수익증권의 총좌수</u> 는 1 조좌로 한다.	제 8 조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) ----- ----- <u>수종의</u> <u>수익증권</u> -----
제 9 조(추가신탁) 자산운용회사는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<u>수익권의 총좌수</u> 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,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.	제 9 조(추가신탁) ----- <u>수종의</u> <u>수익증권</u> ----- -----
제 10 조(신탁금의 납입) ①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 8 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<u>현금</u> 으로 수탁회사에 납입	제 10 조(신탁금의 납입) ①----- ----- ----- <u>현금 또는 수표</u> -----

<p>하여야 한다.</p> <p>②자산운용회사는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<u>현금으로</u> 수탁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<u>기준가격에</u>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중 추가로 설정하는 <u>수익증권 좌수에</u> 최초설정시 <u>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은</u> 원본액으로,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.</p>	<p>-----.</p> <p>②-----</p> <p>----- <u>현금 또는 수표로</u> -----</p> <p>-----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</u> 추가로 설정하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</u> 한다.</p> <p>③-----</p> <p>-----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 -----</p> <p>----- <u>공고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은</u> 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 13 조(수익권의 분할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황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<u>수익권의 좌수에</u>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.</p> <p>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<u>그 권리의 내용에는</u> 차이가 없다.</p>	<p>제 13 조(수익권의 분할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----- <u>수익증권의 종류별로</u> 수익증권의 -----.</p> <p>③-----</p> <p>----- <u>당해 수익증권의 종류가 같다면</u> 그 권리의 -----.</p>
<p>제 14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자산운용회사는 제 8 조 및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증권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<u>기명식 수익증권을</u>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②~④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 14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다음 각호의 1 에</u>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-----.</p> <p>1. A 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2. C 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3. C-e 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②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제 1 항 각호의 수익증권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49 조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
<p>제 19 조(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)</p> <p>①당일에 공고되는 <u>기준가격은</u>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“<u>순자산총액</u>”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<u>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,</u>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<u>계산한다.</u>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,000 원으로 하고 이 경우 1 좌는 1 원으로 한다.</p>	<p>제 19 조(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)</p> <p>①기준가격 [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</u>]----- <u>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투자신탁]</u>----- “<u>순자산총액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]</u>”----- <u>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</u> ----- <u>산정</u>-----</p> <p>----- <u>계산하여</u> <u>공고한다.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<u>설정하는 날[신규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</u></p>

<p>④자산운용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야 하며,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·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<단서조항 신설></p>	<p>날]-----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,000 원으로 공고한다.</p> <p>④-----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----- ----- 다만,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·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.</p>
<p>제 20 조(수익증권의 판매가격) <신 설></p> <p>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3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 20 조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 1. A 클래스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 있음 2. C 클래스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3. C-e 클래스 수익증권 : 온라인 가입자 ②----- -----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신규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 19 조 제 3 항을 준용한다)----- -----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----- ③제 2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신규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 19 조 제 3 항을 준용한다)으로 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 20-1 조(판매수수료) ①판매회사는 A 클래스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.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)의 100 분의 5 범위이내에서 클래스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한다. 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 1. A 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7%</p>
<p>제 22 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1 조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</p>	<p>제 22 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 제 2 영업일(15 시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3 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</p>

<p>②~④(생략)</p>	<p>-----.(이하 현행과 같음) ②~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23 조(환매수수료) 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 21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<u>그 수익증권을</u>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<u>기준가격</u>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 ②환매수수료는 <u>이익금</u>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2. 180 일 미만 : 이익금의 50% 3. 365 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<신설></p>	<p>제 23 조(환매수수료) ①이 투자신탁의 모든 클래스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 ----- -----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 ----- ----- (당해 <u>종류</u> 수익증권 ----- -----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</u> ----- ----- -----. ②환매수수료는 <u>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</u>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2. 30 일 이상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<삭제> 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“<u>수익증권 통장거래약관</u>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
<p>제 28 조(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) ①~②(생략) <신설></p>	<p>제 28 조(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</p>
<p>제 33 조(수익자총회의 연기) ①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. ②(생략) ③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<u>수익자의 수익증권총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수</u>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,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></p>	<p>제 33 조(수익자총회의 연기) ①----- ----- <u>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</u> ----- -----. 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<u>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</u> ----- <u>수익증권의 총좌수</u> ----- ----- -----. ④제 28 조제 3 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 29 조제 2 항, 제 3 항, 제 6 항, 제 30 조제 2 항, 본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“<u>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</u>”는 “<u>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</u>”로 본다.</p>

<p>제 38 조(운용제한)</p> <p>①(생략)</p> <p>1.(생략)</p> <p>2.(생략)</p> <p>가.(생략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,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(증권거래법 제 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) 또는 채무증서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)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다.(생략)</p> <p>3.(생략)</p> <p>4.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행위</p> <p>5.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행위</p> <p>6.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를 초과하는 행위</p> <p>7.~9. (생략)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제 38 조(운용제한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2.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채권 및 어음(법제 2 조제 7 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다. 이하 이목에서 같다), ----- 채권, 채무증서 및 어음, ----- 채무증서 및 어음, -----</p> <p>다.(현행과 같음)</p> <p>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-----</p> <p>5. <u>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</u> ----- 위험평가액[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 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 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매 1 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 이하 '위험평가액'이라 한다]</p> <p>6. <u>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</u> -----</p> <p>7.~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39 조(자산운용지시등)</p> <p>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·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,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·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.</p>	<p>제 39 조(자산운용지시등)</p> <p>①-----</p> <p>-----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·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.</p>

<p><신 설></p> <p>②~④(생 략)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간접투자증권(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된 간접투자증권 또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한한다)의 매매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[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대외지급수단(이하 “대외지급수단”이라 한다)의 매매계약일부터 3 영업일을 초과한 장래의 약정한 시기에 거래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로서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] <p>②~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40 조(투자신탁보수)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투자신탁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투자신탁의 해지 <p><신 설></p> <p>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<u>투자신탁보수</u>는 다음 각 호의 <u>보수율</u>에 <u>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</u>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4.5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0.5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5 	<p>제 40 조(투자신탁보수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투자신탁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투자신탁의 <u>일부</u>해지(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) <p>3. 투자신탁의 전부해지</p> <p>③----- <u>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</u>----- -----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</u>----- <u>당해</u> <u>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</u>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A 클래스 수익증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4.5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3.5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 C 클래스 수익증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4.5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0.5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 C-e 클래스 수익증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4.5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0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
<p>제 41 조(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)</p> <p>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, 자산운용회사의 지</p>	<p>제 41 조(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)</p> <p>①----- <u>전</u> <u>체 수익자</u>-----</p>

<p>른 손익은 수탁회사에 귀속되며, 우선충당금에 대하여 지급할 이자율 등에 대하여는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.</p>	
<p>제 48 조(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) ①~②(생략) <신설></p>	<p>제 48 조(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</p>
<p>제 51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 ①~③(생략) ④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 123 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<단서 조항 신설></p> <p>⑤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련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에 의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 51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 ①~③(생략) ④----- ----- ----- - 다만,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⑤----- ----- -----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. ⑥수탁회사는 제 4 항의 수탁회사보고서를 판매회사에 제출하여 자산운용보고서와 함께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</p>
<p>제 52 조(수익증권저축) (생략)</p>	<p>제 52 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</p>